

# 보 도 자 료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2016헌마33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긴급조치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내용 중 국가권력이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대법원 판결은 현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국가가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기각/각하]



2019. 7. 25.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관련된 불법 수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39), 청구인 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의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모두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24385) 상고마저 기각되자, 2018. 8. 10. 위 2018다224385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43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결정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 이유의 요지

###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각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판결일 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는 헌법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관한 부분,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

####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에 관한 부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전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구 민주화보상법(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다.

청구인 금○○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응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금○○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으로 청구인 금○○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인바, 이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은 2010헌바132 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임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긴급조치 발령 및 그에 수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결정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단은 헌법 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미 확정된 재판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